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2
----------	-----

2024.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회신내용을 반영하여 장수 축하물품을 추가함으로써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지원범위를 장수축하금에서 장수축하금 등(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으로 확대함.(조문 및 별표)
- 다.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변경함.(안 제5조)
- 라. 명칭을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변경함.(조문)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142,280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4. 3. 15. ~ 2024.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가. 조례안 개정의 배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이며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축하금(1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사업을 시행 준비에 있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는 「특정 연령 도달을 이유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금이 아닌 장수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재협의 결과를 보내온 바, 이를 반영하여 아래표와 같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았음.

<표> 장수축하금 사업 변경 내용

	기 존	변 경
사업명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어르신 장수축하금 등 지원
사업기간	2024. 1.~12.	2024. 6.~12. ※ 조례 개정 후 사업 시행
사업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100세 이상 거주 어르신(94명 / '24.1월말 기준) ※ 2025년부터 100세 어르신만 지원 예정(42명)	
사업내용	1회 1,000,000원 장수축하금 지원	1회 500,000원 상당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정물품 전달 / 관내 업체 협약 후 선구매·후지급 등
소요예산	140,280천원(2024년 예산편성)	70,280천원(70,000천원 예산절감)

- 위와 같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된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금번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표> 개정안 주요 내용

	기 존	변 경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범위 확대	장수축하금	장수축하금 등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
금액 변경	100만원	100만원 아내
명칭 변경	노인	어르신

나. 주요 개정 사항 검토

1) 장수축하금 대상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호)

- 집행부는 현행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변경한 바, 이는 장수노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자 하는 뜻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담당조직명도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바뀐 점에서도 일부 이해가 된다고 하겠음.
- 그러나 ‘노인’과 ‘어르신’은 다른 개념인 바, ‘노인’은 물리적 숫자를 기준으로 판별한다면, ‘어르신’은 숫자에 더해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 권리와 의무의 조화,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 등 복합적인 의미가 부여된 용어라고 하겠음.
- 또한 ‘노인’은 법률용어인 반면에 ‘어르신’은 사회적 용어인 바, 본 조례의 상위근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집행부가 경로사상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법령 해석

상 혼선될 우려는 없다고 하겠으며, 조례 제·개정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입법재량 측면에서도 선택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법률용어 통일성을 감안하여 ‘노인’과 ‘어르신’ 용어 선택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장수축하물품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신설)

-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수축하금이 아닌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협의를 한 바, 이를 반영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100만원 이내의 일정 물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정의하여 지급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장수축하물품’을 ‘건강 유지 도움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 굳이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겠음.
- 개별 장수노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건강 관련 상품(건강 보조제, 안마용품 등)이외에도 개인화된 상품(이름이 새겨진 만년필 등 필기도구나 각종 기념품)이나 휴식·여유를 위한 상품(향초나 디퓨저, 커피 고급세트), 여행경험 상품(숙박권 등)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넓은 선택 재량권을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제명 변경

- 집행부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장수축하금이 아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자 하지만, 장수노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선물이 ‘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수축하금’과 ‘장수축하물품’을 구청장이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안 제3조), 이를 반영하여 제명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다. 결 론

- 금번 개정안은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는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감안하여 ‘장수노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법적 근거 없이 ‘장수어르신’ 으로 변경할 것인지와 ② ‘장수축하물품’ 을 건강 유지 도움 상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 사항

검토결과	재협의
필수 검토사항	<p>○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연령 도달을 이유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금이 아닌 장수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회성이라도 실제 지급되는 현금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기초연금과 완전히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질 의 :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노인을 어르신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조례가 상위법인 「노인법」을 근거로 하므로, 노인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나
- 답 변 :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공경의 의미나 순화된 표현 선택으로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같은 조례가 있는 10개 구 중에서 8개 구도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질 의 : 장수축하금 외에 장수축하물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별지3호 서식에 개정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 답 변 : 개정 사항이 누락되었음. 지적에 따라 수정이 필요함

7. 토론 요지

-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과 법체계에 적합한 용어로 개정 없이 현행 용어를 유지하고, 별지 중 개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52호

발의일자 : 2024. 4. 2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과 법체계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고, 별지 서식 중 개정
에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상위법과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1조제2항)
- 서식을 일부 수정함(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어르신”을 “노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수어르신”이란”을 ““장수노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르신의”를 “노인의”로 하며, 같은 호 및 제3호 중 “장수어르신”을 각각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장수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장수어르신”을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장수어르신 본인”을 “장수노인 본인”으로, “장수어르신의”를 “장수노인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장수어르신”을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어르신”을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어르신”을 “노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u> <u>지급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u> <u>지급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u> <u>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수축하금</u>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u>노인</u> 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장수축하금</u> 및 <u>장수축하물품</u> ----- ----- <u>어르신</u> ----- -----	제1조(목적) ----- <u>장수축하금</u> 및 <u>장수축하물품</u> ----- ----- <u>노인</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 <u>장수노인</u> ” 주민등록상 <u>나이</u> 가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1. “ <u>장수어르신</u> ” ----- -----	(현행과 같음)
2. “ <u>장수축하금</u> ”이란 <u>노인</u> 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	2. ----- <u>어르신의</u> ----- -----	(현행과 같음)

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장수축하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장수어르신-----
-----.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
----- 장수어르신-----
----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 등-----
----- 장수축하금 등-----
----- 장수어르신-----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
----- 장수노인-----
--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 등-----
----- 장수축하금 등-----
----- 장수노인-----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

--.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 등-----

----- 100만원 이내로---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등-----

----- 장수축하금 등-----
-----.

② -----
----- 장수어르신-----
----- 장수어르신 -----

----- 장수축하금 등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
----- 장수노인-----
----- 장수노인 -----

----- 장수축하금 등 -----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위 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장수축하금 등 -----
-----.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 장수축하금 등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

----- 장수축하금 등 -----
-----.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

<p>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u>장수노인</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p>	<p><u>일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u> 제8조(지급 제외) ----- <u>장수어르신</u>----- ----- -----.</p>	<p><u>까지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u> 제8조(지급 제외) ----- <u>장수노인</u>----- ----- -----.</p>
<p>1. <u>장수축하금</u> 지급일 기준으로 <u>장수노인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u></p>	<p>1. <u>지급대상자가</u> ----- <u>사망</u>----- -----</p>	<p>(개정안과 같음)</p>
<p>2. <u>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u></p>	<p>2. <u>지급대상자가</u> ----- -----</p>	<p>(개정안과 같음)</p>
<p>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u></p>	<p>제9조(환수 조치) ----- ----- -- <u>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u> -----.</p>	<p>(개정안과 같음)</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우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2. -----
-- 장수축하금 등-----

제10조(대장 관리) ----- 장수축하금 등 지급 업무-----
-----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
-----.

제11조(신청 안내) ① ----- 장수축하금 등-----

-----.

② ----- 어르신-----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 노인-----

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장수축하
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
다.

----- 장수축하
금 등 -----.

----- 장수축하금 등
-----.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지 급</td> <td style="width: 40%;">성명</td> <td style="width: 50%;">생년월일(성별)</td> </tr> <tr> <td>대상자</td> <td>연락처</td> <td>주소</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지급 계좌</td> <td style="width: 20%;">예금주</td> <td style="width: 20%;">은행명</td> <td style="width: 50%;">계좌번호</td> </tr> </table> <p>「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p> <p>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h> </tr> <tr> <td style="padding: 5px;">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10px;">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td> </tr> </table>	지 급	성명	생년월일(성별)	대상자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p>[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지 급</td> <td style="width: 40%;">성명</td> <td style="width: 50%;">생년월일(성별)</td> </tr> <tr> <td>대상자</td> <td>연락처</td> <td>주소</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지급 계좌</td> <td style="width: 20%;">예금주</td> <td style="width: 20%;">은행명</td> <td style="width: 50%;">계좌번호</td> </tr> </table> <p>「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p> <p>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h> </tr> <tr> <td style="padding: 5px;"> 본인은 장수축하금 등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10px;">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td> </tr> </table>	지 급	성명	생년월일(성별)	대상자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등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p>[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과 같음)</p>
지 급	성명	생년월일(성별)																										
대상자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지 급	성명	생년월일(성별)																										
대상자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등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을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의 지급일”을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일”로 한다.

제5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등”으로, “100만원으”를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수축하금 지급을”을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제1호 중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가”로, “장수노인이 사망”을 “사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의”를 “지급대상자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축하금을”을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장수축하금 지급 업무”를 “장수축하금 등 지급 업무”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을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등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2.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 위임장

지급 대상자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위임 사유

위임자(본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수축하금</u>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3조(<u>장수축하금의 지급</u>)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u>범위에서 장수축하금</u>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지급 대상) <u>장수축하금</u>의</p>	<p><u>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u> -----</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u></p> <p>제3조(<u>장수축하금 등의 지급</u>) ---</p> <p>-----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u>장수축하금 등</u>”이라 한다)---.</p> <p>제4조(지급 대상) <u>장수축하금 등</u></p>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의 지급
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
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
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
로 한다.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
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
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
다.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
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
편 등의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
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
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
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
축하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의 지급 대상-----
-----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일

-----.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 등---

----- 100만원 이내---.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
----- 장수축
하금 등 지급 신청서-----
-----.

② -----

----- 장수축하금 등 -----
----- 장
수축하금 등 -----
-----.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
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
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장수축하금을 지급받
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금 지급일 기준으로
장수노인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의 수
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① ----- 장수축
하금 등 -----

----- . --- 장수축하금 등-----

---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
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에게 지급
한다.

제8조(지급 제외) -----

----- .

1. 지급대상자가 -----
사망-----

2. 지급대상자가 -----

제9조(환수 조치) -----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우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

1. (현행과 같음)
2. -----
- 장수축하금 등-----

제10조(대장 관리) ----- 장수축하금 등 지급 업무-----
-----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
-----.

제11조(신청 안내) ① -----
장수축하금 등-----

-----.

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
----------	-----

제출연월일: 2024. 4. 12.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회신내용을 반영하여 장수 축하물품을 추가함으로써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지원범위를 장수축하금에서 장수축하금 등(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으로 확대함(조문 및 별표)
- 다.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변경함(안 제5조)
- 라. 명칭을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변경함(조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142,280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4. 3. 15. ~ 2024.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으로, “노인”을 “어르신”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의”를 “어르신의”로,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장수노인”을 “장

수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등”으로, “100만원으로”를 “100만원 이내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장수노인”을 각각 “장수어르신”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노인”을 “장수어르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가”로, “장수노인이 사망”을 “사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의”를 “지급대상자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축하금을”을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장수축하금”을 각각 “장수축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을 “어르신”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등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 위임장

지급 대상자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위임 사유

위임자(본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수축하금</u>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u>노인</u>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수노인</u>”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u>장수축하금</u>”이란 <u>노인</u>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u>장수노인</u>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p><신 설></p> <p>제3조(<u>장수축하금</u>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u> ----- ----- ----- <u>어르신</u>-----.</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수어르신</u>” -----. 2. ----- <u>어르신의</u> ----- ----- <u>장수어르신</u>-----. 3. “<u>장수축하물품</u>”이란 <u>장수어르신</u>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p>제3조(<u>장수축하금</u> 등의 지급) --- -----</p>

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

----- 장수어르신-----
-----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 등----- 장수축하금 등-----
----- 장수어르신-----.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 등---
----- 100만원 이내로--
-.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등 -----
----- 장수축하금 등 -----
-----.

② ----- 장수어르신-----
----- 장수어르신 -----
----- 장수축하금 등

하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급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급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급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급 지급일 기준으로 장수노인이 사망하거나 전출

-----.
----- 장수축하급 등

--.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 장수축하급 등 -----

-----.
--- 장수축하급 등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제외) ----- 장수어르신-----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의 수
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
여야 한다.

1. (생 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
우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장수
축하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
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의 전달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2. 지급대상자가

제9조(환수 조치)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1. (현행과 같음)
2. 장수축하금 등

제10조(대장 관리) 장수
축하금 등 지급 업무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제11조(신청 안내) ① 장수축하금 등

② 어르신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
하여야 한다.

장수축하금 등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사회7급 정유진(02-3423-5915)